

대법원 2021도10579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국가정보원 차장 및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언론기관에 ‘탈북위장 화교 간첩사건의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탈북자의 법정증언 내용’ 등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이른바 ‘탈북위장 화교 간첩사건’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는 탈북자 A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였음
- A는 증언 이후, 자신이 비공개 증언을 한 사실이 북한에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담당 재판부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1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차장, 피고인2, 3은 국정원 직원 들임
- 피고인들은 ‘A의 비공개 법정증언이 북한에 유출된 사실’을 ‘탈북위장 화교 간첩사건’의 피고인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정황증거라고 판단하

고, 국정원의 간첩사건 관련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고 우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위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 내용 등 (이하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을 언론에 누설하기로 공모하였음

-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은 이를 누설할 경우 증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증인보호를 통해 실제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는 재판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정원 직원인 피고인2, 3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피고인1은 국정원에 대한 비난 여론에 총력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2, 3에게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2, 3은 언론사 기자에게 위 내용을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정원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을 누설하였음

다. 소송경과

- ▣ 제1심: **유죄**(① 피고인1: 징역 1년, ② 피고인2, 3: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1, 2가 항소하였음
- ▣ 원심: 피고인들 각 **무죄**
- ▣ 원심의 무죄 판단 이유
 - **피고인1이 누설행위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1이 누설행위를 지시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1의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소극)

-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함.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참조)
- A의 비공개 법정증언 등은 그것이 누설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A의 탄원서 내용 또한 그것이 유출되더라도 국가적 법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비공개 증언이 유출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는 최초 유출 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국정원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피고인1이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의 누설행위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이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검사만 항소하고 자신은 항소하지 않은 공동피고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규정 내용과,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됨.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1, 2와 파기 이유가 공통된다는 이유로, 검사만 항소한 피고인3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판단한 것은 적법함